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 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          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별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          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별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호번 정정 및 오기 정정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           ①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           ①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2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</p>

	<p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2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</li> <li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</li> <li>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</li> <li>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</li> <li>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</li> </ul> <p>③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2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</p>	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</p>

	<p>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 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(생략)</p>	<p>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 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(현행과 같음)</p>
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 한 판매제한 삭제	<p><b>제22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b></p> <p>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외국환 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 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<b>제23조(판매가격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 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 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<b>제23조(판매가격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 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 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<b>제25조(판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 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 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 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 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</p>	<p><b>제25조(판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구시 <u>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 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 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 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</p>

	<p>의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수의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의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b>4영업일</b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b>5영업일</b>)에 수의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<b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<b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<b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차대조표</u></li> <li>2. ~ 3. (생략)</li> </ol> <p>②(생략)</p>	<p><b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재무상태표</u></li> <li>2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<b>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</p>	<p><b>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</p>

	<p>의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⑥ (생략)</p>	<p>의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<b>제43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생략)</p>	<p><b>제43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별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별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</p>

	<p>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생략) ② ~ ⑩ (생략)</p>	<p>이 항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-	<신설>	<p><u>부 칙</u> 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